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835 발의연월일: 2022. 10. 17.

발 의 자 : 임이자 · 지성호 · 태영호

이종성 • 박성민 • 서일준

박대수 · 정희용 · 김형동

김예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하수의 원활한 유출을 통한 관할 구역의 침수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침수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공하수도에 대한 유지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않는다면 침수 예방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특히 '20년 집중호우·태풍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22년 8월 중부지방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극단적 강우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빗물 배제를 위한 공공하수도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중점관리지역, 상습침수지역 등에 대한 하수만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해당 시설을 점검하도록하여, 하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집중호우 시에도 빗물이 제때 배제되게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및 제80조제2항제2호 신설 등).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조의4(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①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 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은 침수 등 재해 예방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한 다음 연도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중점관리지역
 -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하 수에 의한 침수위험이 있다고 인정된 지역
 - 3.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 ②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는 관로, 우수토실, 맨홀, 빗물받이 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을 포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방법, 구체적인 범위 및 점검 주기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을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한다. 법률 제18914호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제8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2. 제4조의4제2항 후단에 따른 유지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4제2항 후단 및 제8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조의4(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① 제18조에 따른 공
	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
	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은 침수
	등 재해 예방 또는 하수의 원활
	한 흐름을 위하여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한 다음
	연도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u>1. 중점관리지역</u>
	2.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하수에 의한 침수위험이
	있다고 인정된 지역
	3.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
	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유지
	관리계획에는 관로, 우수토실,
	맨홀, 빗물받이 등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
	로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

제12조(설치기준 등) ① <u>제18조에</u>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 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 1. 2. (생략)
- ②・③ (생 략)

법률 제18914호 하수도법 일부개 정법률

제80조(과태료) ① 삭 제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생략)

<신 설>

2. · 3. (생략)

③ ~ ⑥ (생 략)

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수 관로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방 법, 구체적인 범위 및 점검 주기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설치기준 등) ① <u>공공하수</u> <u>도관리청</u>-----

- 1. · 2. (현행과 같음)
- ② · 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914호 하수도법 일부개 정법률

제80조(과태료)

- ______
- 1. (현행과 같음)
- 2. 제4조의4제2항 후단에 따른

 유지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
- <u>3</u>. · <u>4</u>.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 ③ ~ ⑥ (현행과 같음)